

창원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64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7.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33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89,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경 및 2016년경 피고에게 사천시 일대 건물의 가스배관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3,500,000원, 자재 및 경비로 30,689,815원, 합계 104,189,815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피고의 기성 공사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80,500,000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기성 공사대금과 이 사건 선급금과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3,689,815원(= 104,189,815원 - 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3,689,81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선급금이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기성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액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공사내역서(갑 제9호증)에는 단순히 피고가 공사한 장소와 공사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피고가 30,389,815원 상당의 자재 및 경비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결제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명세서의 인수확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재구입이 피고를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에게 그 자재가 공급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자재구입에 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서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30,389,815원 상당의 자재 및 경비를 지급받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을 제3호증(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사천시 C에 있는 건물을 포함해 합계 151건의 배관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은 피고가 위 배관공사의 일부만을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당초 피고가 지급받은 자재 및 경비 액수가 33,430,000원이고,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이 61,19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의 부당이득금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는 객관성과 일관성도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수미, 판사 강 웅